

무역결제수단인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 낙 현*
김 영 곤**

-
- I. 서 론
 - II. 새로운 무역결제수단인 TSB/BPO 제도의 도입
 - III. TSU/BPO의 이용상의 장단점과 이용 현황
 - IV.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
 - V. 결 론

주제어 : 세계은행간 금융데이터통신협회, TSU, 은행지급보증,
은행지급보증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

I. 서 론

상업신용장에는 화환신용장과 무담보(무화환)신용장이 있으며 종래에는 전자

* 경남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주저자)

** 경남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교신저자)

가 압도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무역형태·내용의 변화에 따라 후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무역거래 중에서 대금결제와 크게 관련이 있는 운송서류의 변화에도 통용되는 바이며 해상화물운송장, 선하증권의 포기(Surrender B/L) 등의 보급이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¹⁾

2003년에 무역거래전자화의 검토를 개시한 세계은행간 금융데이터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SWIFT)²⁾는 2008년에 은행 간 거래전자화의 제도인 TSU(Trade Service Utility)를 완성시켜 국제표준으로서 가동을 개시하였다. TSU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각각의 거래은행에 제출한 구매발주서(Purchase Order : P/O)의 내용을 공통의 TSU 시스템 중에 일치시킨 후에 일치한 내용과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실제의 선적정보에 대한 정합성을 자동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없으면 수입자가 그 거래은행의 계좌에서 수출자에게 대금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9년 3월 이 TSU에 은행지급보증(Bank Payment Obligation : BPO)의 기능이 추가되어(이하, 이것을 “TSU/BPO”라 한다), 이것이 무역신용장을 대신하는 무역결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TSU/BPO는 수출자와 수입자로부터 각각의 거래은행에 미리 제출된 구매발주서의 데이터에 관해 그 내용이 은행상호간에 상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자로부터 제공된 수출정보가 해당 구매발주서의 내용과 일치가 확인된 단계에서 수입자의 은행에서 수출자의 은행에게 무역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³⁾

더욱이 SWIFT는 그 이용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1년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와 업무제휴를 하여, 지금까지 SWIFT가 책정하고 있던 BPO 규정집(Rulebook)⁴⁾(이하, “SWIFT 규

1) 이시환·김정희, 국제운송론(제2판), 대왕사, 2010, p. 192~196.

2) 강원진, 신용장론(제5판), 박영사, 2007, p. 447. ; 오원석, 무역계약과 결제, 삼영사, 2007, p. 116. ; 채진익,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 도입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9권, 2011, p. 410. 1973년에 벨기에에서 설립되어 세계 212개국, 10,116의 금융기관과 참가기업(2012년 5월 현재)을 연결하여 국제적인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3) D. J. Hennah,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ICC Publication No. 751, 2013, p. 23.

정집”이라 한다)을 대신하는 보다 범용적인 새로운 통일규칙(은행지급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750 : URBPO))의 책정이 이루어져 2013년 4월 17일 리스본에서 개최된 ICC 은행위원회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⁵⁾ 또한 URBPO의 발효일은 2013년 7월 1일부터이다. 이 TSU/BPO도 매수인에게 선하증권의 직송이라는 이른바 선하증권에 담보 기능이 없는 무담보신용장이라는 일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무역결제수단인 ICC에 의한 그 규정집인 URBPO를 중심으로 TSU/BPO 제도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은행 간의 전자무역거래 제도인 TSU/BPO의 거래의 흐름, 이용상의 장단점 등을 설명한 후,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해상운송서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II. 새로운 무역결제수단인 TSU/BPO 제도의 도입

1. 화환신용장제도의 한계

화환신용장제도가 표준적인 무역결제방식으로서 채택된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단계에서 표면화된 문제는 특히 근해항로에서 컨테이너선의 보급과 선박의 고속화에 기인한 선하증권의 위기인데 그 회피책으로서, ① 화물선취보증장(L/G) 인도, ② 보증신용장(Standby L/C)의 사용, ③ 해상화물운송장(SWB), ④ Surrender B/L 등이 이루어졌지만,⁶⁾ 어느 방법에서도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여 이로 인해 무역서류의 전자화에 의한 Bolero(Bill of Lading

4) SWIFT의 TSU 2.0의 제7장 제7항 BPO의 항목에 Rules로 규정하고 있다.

5) A. Casterman, “Accelerating Global Trade Finance”, SWIFT, 2012a, p. 1. ; A. Casterman, “The BPO update”, *DCInsight*, Vol.18, No.3, 2012b, p. 2. ; Meynell, D., “The BPO: a banker’s perspective”, *DCInsight*, Vol.18, No.2, 2012, p. 15. ; 채진익,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제9권 제4호, 2013a, p.172~176.

6) 이시환·김정희, 전게서, pp. 192~196.

Electronic Register Organization)⁷⁾ 등에 의한 상업서비스도 전개되었다.⁸⁾

그러나 이 무역금융 EDI 시스템도 무역서류에 대한 점검업무의 전자화만이 지연되어 수작업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화환신용장제도 하에서는 매수인에게 선하증권이 도착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없었다.

이 부문의 전자화는 조합(matching)작업에 소요되는 소프트의 완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자체의 사용률이 20% 정도로 감소하고 있어 규모의 이점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개발비용의 염출이 어렵게 되어 그 전자화가 단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국제화·글로벌화로 인해 기업 내(그룹 내)무역이 증가하여 반드시 신용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송금·상계 등으로 대체도 가능하게 되어 오늘날에는 해상화물운송장과 Surrender B/L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⁹⁾

화환신용장제도 하에서 선하증권은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화체한 권리증권으로서 유통성이 있는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등이 요구되었다.¹⁰⁾ 그러나 선하증권의 위기에 대한 회피책의 하나로서 비화환신용장결제방법이 보급되어 화환취결이 수반되지 않는 무담보신용장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 특징으로서는 기명식 선하증권, 수취식 선하증권 등을 들 수 있다.¹¹⁾ 또한 컨테이너선의 보급으로 해양상 전매가 적어지고 기업 내 무역이 증가한 오늘날에는 해상화물운송장과 같은 비유통성 선하증권도 일반화되고 있다.¹²⁾

7) Bolero는 무역관련서류의 전자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8년에 SWIFT와 TT Club(Through Transport Club: 선사와 항만당국이 참가)이 50%씩 출자하여 설립되어 1999년 9월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임석민, 선하증권론(개정판), 두남, 2010, pp. 145~146.).

8) SWIFT, "BPO press coverage," gtnews, 2012, p. 6. ; 新堀聡, 現代貿易売買—最新の理論と今後の展望, 同文館, 2001, p. 222.

9) 合田浩之, "船荷証券の元地回収について", 日本貿易学会年報, 第43号, 2006, p. 248. ; 合田浩之, "記名式船荷証券・海上運送状の卓越—その意味するところについて—", 国際商取引学会年報・第9号, 2007, p. 246.

10) 임석민, 국제운송론(제3판), 삼영사, 2007, pp. 323~327.

11) 상계서, pp. 324~327. ; 김은주, "국제운송계약상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선하증권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1권, 2011, pp. 321~323.

12) 임석민, 선하증권론(개정판), 전계서, pp. 109~111.

더욱이 유통성 선하증권이면서, ① 매수인에게 1통의 선하증권원본의 직송,¹³⁾ ② Surrender B/L 등도 증가하고 있다.¹⁴⁾ 그러나 ①의 1통의 선하증권원본을 매수인에게 직송하는 경우에 나머지 2통의 선하증권만으로는 담보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신용장면에 그 허용조건을 첨부하지 않는 한 은행도 매입을 하지 않는다.

또한 ②의 Surrender B/L도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송하인이 선적지에서 운송물이 양륙지에 도착하기 전에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회수한다는 동남아시아 근해항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관습이지만, 이 선하증권의 포기도 본래 선하증권이 가진 화환어음의 담보로서의 기능이 없게 되므로 ①과 마찬가지로 신용장면에서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은행은 매입을 하지 않는다.

2. TSU/BPO의 개발의 경위와 거래의 흐름

1) TSU/BPO의 개발의 경위

TSU가 개발되게 된 경위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Bolero와 일본의 TEDI(Trade Electronic Data Interchange)¹⁵⁾의 이용의 정체, 송금결제(Open Account : O/A)거래의 진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처라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보인다. Bolero는 1999년 9월에 무역거래의 선적서류를 비롯한 모든 흐름을 완전히 전자화하기 위해 많은 대기업이 참가하여 설립한 세계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해상화물운송장의 보급, 참가기업 내 네트워크와의 경합, 고액의 가입비·운영비, 그 결과로서 네트워크의 외부성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등의 이유에 따라 이용이 정체하고 있다.¹⁶⁾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시스

13) 平野英則, “特殊な信用状の発行時における実務上の留意点(その3)”, 銀行法務, 第690号, 経済法令研究会, 2008, p. 62.

14) 임석민, 선하증권론(개정판), 전개서, pp. 327~328.

15) 일본경제산업성의 백업을 받아 진행된 무역거래전자화추진프로젝트로 1998~2000년에 개발과 실증실험이 이루어져 보급추진을 위한 단체인 TEDI Club이 설립되고 2001년 11월에 실용화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충분한 사용자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의 사업회사인 TEDI Advanced Network도 2005년 3월에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템개발비를 비롯한 높은 제경비의 부담 등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TEDI의 경우에도, 무역의 자금결제수단이 전세계적 기준으로 80% 이상이 수수료가 보다 저렴하고 서류작성 등의 부담이 적은 O/A 방식으로 되어 왔던 점에서 지금까지 신용장거래에서 금융기관이 그 발행 단계부터 최종 수입자의 자금결제의 단계까지 기업으로부터 얻어진 무역거래에 관한 여러 정보입수가 한정적이 되었다.¹⁷⁾

이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1999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수출신용보험업자(Coface)¹⁸⁾가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Trade Card라는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이 시스템은 구매발주서와 선적명세서를 작성하여 그 정보가 Trade Card System의 D/B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조합이 이루어져 조합결과가 일치하면 은행에 대해 지급지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¹⁹⁾ 그런데 이 시스템은 수입자에게 악의가 있으면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여 수출자와 수입자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과제이었다.²⁰⁾ 이와 같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도 각종의 무역금융공여의 수익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수급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제도의 검토가 부득이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SWIFT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TSU/BPO를 개발하게 되었다.

2) TSU/BPO의 거래의 흐름

TSU/BPO에 의한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²¹⁾ 우선 수출자·수입자 간의

16) 八尾晃·外, 貿易と信用狀—UCP600に基づく解説と実務, 中央經濟社, 2010, p. 265.

17) Lee Consultants Ltd., “Introduction to and Comments on Bank Payment Obligation(BPO)”, 2013, p. 3. ; SWIFT, *op. cit.*, p. 6. ; P. Johnson, “The Bank Payment Obligation: 21st Century Trade Settlement”, TMI Special Report, 2013, p. 22.

18) 코파스(Compagnie française d'assurance pour le commerce extérieur, Coface) : 프랑스 보험회사로 1946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었지만 1994년 민영화되었다. 현재 프랑스 민간은행인 NBP(Natexis Banques Populaires)가 최대주주이다. 프랑스 정부를 대신해 수출보험, 국내 신용보험 및 보증, 각종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19) 오원석, 전계서, pp. 154~156.

20) 小林二三夫, “小売業の國際調達と電子L/Cの方向性”, 日本貿易学会年報, 第46号, 2009, p. 178.

21) 中島真志, SWIFTのすべて, 東洋經濟新報社, 2009, p. 182.

매매계약체결 후 쌍방의 거래은행에 구매발주서와 BPO의 신청을 어떤 수단을 통해 제출하고 그리고 쌍방의 거래은행이 SWIFT 설정의 TSU 시스템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구매발주서의 자료를 입력하고 이 때에 BPO 첨부라는 취지를 시스템 상에 명시한다(〈그림 1〉 참조).²²⁾ 이어서 쌍방의 은행이 입력한 자료를 조합(照合)²³⁾한 결과가 양 은행에 환원되어 수출자·수입자에게 환원된다.

이 단계에서 내용의 불일치가 없는 경우 이 자료가 확정완료 베이스라인(established baseline)으로 규정된다. 내용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수출자·수입자로부터 제출된 정정 후의 구매발주서에서 조합의 재고를 한다. 소정의 상한 회수²⁴⁾에 도달해도 조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TSU/BPO 거래는 중지되게 된다. 내용상의 불일치가 없거나 그것이 해소된 단계에서 수출자는 화물의 선적을 하고 그 수출서류를 직접 수입자에게 발송한 후 그 사본을 거래은행에 송부한다.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사본의 선하증권과 송장 등의 수출정보를 TSU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위의 확정완료 베이스라인과 조합을 하여,²⁵⁾ 그 결과가 수출자·수입자 쌍방의 거래은행에 통지되어 수출자·수입자에게 환원된다. BPO가 첨부되지 않은 TSU 거래의 경우는 여기까지에서 종료하고 내용상의 불일치가 없으면 수입자가 결제를 위한 송금지시를 거래은행에 대해 행한다.²⁶⁾

TSB/BPO의 거래의 경우는 BPO 신청에 기초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통상 BPO 발행은행)이 지급확약을 이행, 즉 대금을 수출자의 거래은행 측에 송금하고 거래가 종료한다. 이 BPO의 이행(지급의 실시) 후 수입자가 거래은행에

22) SWIFT, *op. cit.*, p. 2.

23) 데이터의 조합방법에는 엄격한 방법과 완만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으며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각 데이터요소에 대해서는 전자가 이루어지고 이 경우에 데이터의 완전일치가 필요하지만, 기업명 등 몇 가지의 데이터요소에 대해서는 후자가 이루어지고 대문자와 소문자, 스페이스의 유무, 구독점의 차이 등은 허용된다.

24) SWIFT, TSU R2 Notes Acier 112208의 Transaction Stage항에는 6회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25) 조합을 하는 데이터셋은 다음의 4종류로 구분된다. ① 사업데이터셋, ② 운송데이터셋, ③ 보험, ④ 증명서이다.

26) 내용상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는 거래은행 경유로 그 통지를 수령한 수출자·수입자가 그 내용상의 불일치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지를 결정한다. 은행은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면 내용상의 불일치를 받아들이기 위한 고객의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대금의 결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 폐쇄의 절차²⁷⁾가 이루어지면 모든 절차가 완료하게 된다(<그림 2> 참조). 또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지급의 사통지(Intent to Pay Notification)를 보내는 것으로 상대방에 무역대금의 지급의사가 있는 것을 통지하는 절차도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만 현재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²⁸⁾

또한 확정완료 베이스라인이 거래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Baseline Amendment Request”를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그것이 TSU 시스템을 경유하여 상대방의 거래은행에 보내어지고 거래은행이 그것을 수락한다는 취지가 TSU 시스템을 경유하여 요청한 은행에 전달되어 성립하게 된다.²⁹⁾

TSU/BPO 거래의 개요는 위의 내용과 같다. 또한 SWIFT 규정집에서 BPO는 단일의 TSU의 확정완료 베이스라인에 따라 수취은행에 명기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BPO 발행은행의 취소되는 일이 없는 약속으로 정의되고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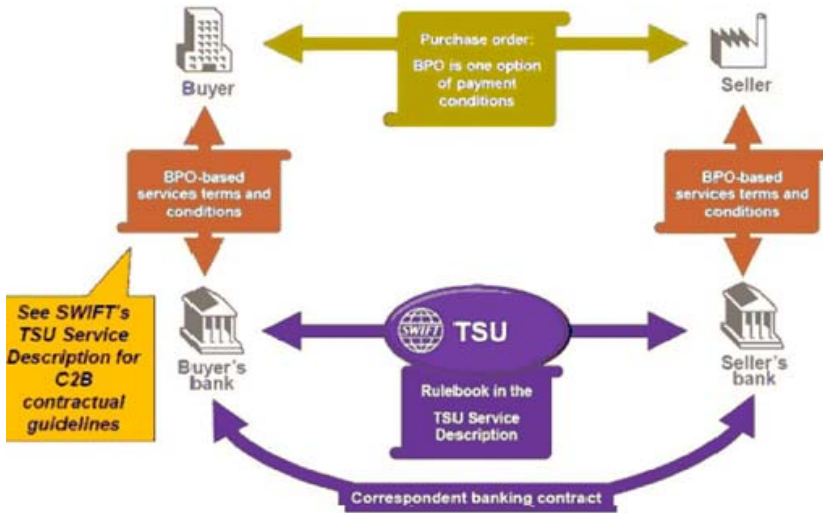
27) 일방의 은행으로부터 베이스라인 폐쇄의 요구가 있고 타방이 그것에 동의하면 폐쇄되고 양 은행에 대해 폐쇄의 통지가 이루어진다.

28) 예컨대 60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는 의향을 통지한다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정보이며 수입자의 은행에 어떤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SWIFT에서는 수출자의 은행이 이 수령에 의해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안심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9) D. J. Hennah, *op. cit.*, p.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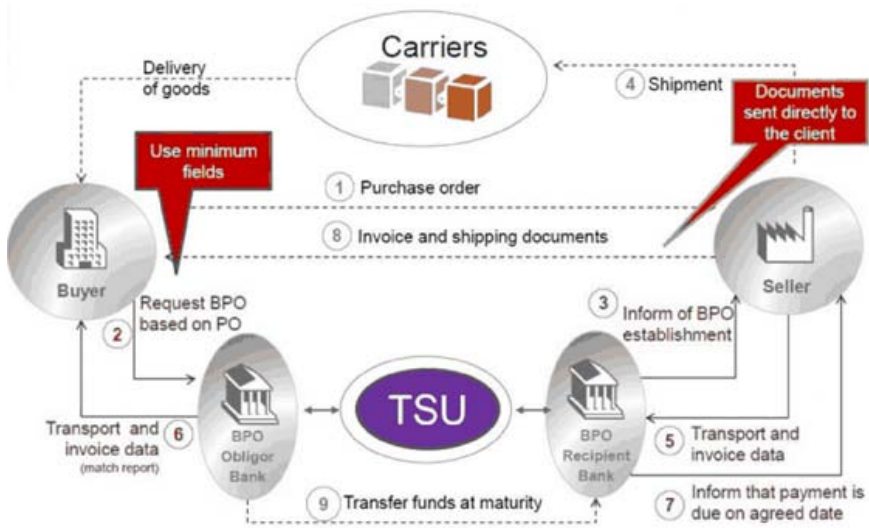
30) SWIFT, *op. cit.*, p. 1.

<그림 1> 계약의 흐름



자료 : Lee Consultants Ltd., *op. cit.*, p. 9.

<그림 2> TSU/BPO 거래의 흐름



자료 : Lee Consultants Ltd., *op. cit.*, p. 7.

3. ICC에 의한 URBPO의 출현

TSU는 무역금융서비스로서 은행 간에 무역관련 서류를 전자화하여 조합하는 구조이지만 BPO도 전자적인 데이터의 조합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 측 은행이 수출 측 은행에의 지급을 약속하는 시스템으로서 지금까지 SWIFT의 사적 규칙으로서 이용되어 왔다.³¹⁾

그러나 SWIFT에 의해 개발·추진되어 왔던 TSU/BPO는 향후 거래상대방이 이용에의 안심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 BPO를 통치하는 ICC의 통일규칙의 채택이 주요한 단계로 보였다. 이로 인해 2011년 9월에 ICC와 SWIFT가 제휴하여 주요한 은행회원도 포함하여 2013년 3월말 완성을 목표로 하는 통일규칙의 책정방침이 결정되었다.³²⁾ 2013년 4월에 리스본의 ICC 총회에서 승인되어 URBPO로서 2013년 5월에 공표되었다.³³⁾

URBPO와 UCP 600의 커다란 차이로서 URBPO는 선하증권 등이 직송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UCP 600에 규정된 운송서류·보험서류 등에 관한 규정과 서류점검에 관련된 규정 등이 없다는 점이다.³⁴⁾

TSU/BPO의 이점으로서 URBPO의 서문과 ICC의 홍보책자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무역거래에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경감, 신속성·신뢰성·편리성, 서류의 경감과 정확성의 개선, 위험관리의 개선, 공급체인 의 확보 등이다.³⁵⁾

31) 佐藤武男, “貿易の電子化で進む新しい貿易決濟”, 『金融法務事情』, 第1846号,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08, p. 43. ; 中島真志, Sibos 2012 大阪のポイント, 『Sibos 2012發表文』, 2012, p. 4. ; 八尾晃, 國際取引と電子決濟, 『東洋經濟情報出版』, 1997, p. 163. ; 檜垣拓也, “L/Cに代わるTSU/BPOの動向, 有効性, 並びに推進課題の考察”, 『國際商取引学会年報』, 第15号, 2013, p. 34.

32) 그 때의 제휴합의에 다음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① 사명(mission)이란 중립의 기술과 산업소유의 도구로서 BPO의 확립, ② 활동(activities)이란 통일규칙책정, 교육과 사업화, ③ 스케줄(timeline)이란 통일규칙의 간행목표를 2013년 3월말로 하는 것이다.

33) ICC Banking Commission, “The Bank Payment Obligation: Capital & Accounting Treatment,” Discussion Paper 470-1204-12, 2012, pp. 1~15. ; 檜垣拓也, “銀行支払確約付きTSUの仕組み現状と SME利用への考察”, 『國際金融』, 第1249号, 2013, p. 74.

34) SWIFT, *op. cit.*, p. 1.

35) *Ibid.*, p. 2. ; 채진익, “국제무역에서 BPO솔루션의 도입과 운용”, 2013년도 한국무역학회

4. URBPO의 개요

1) URBPO의 조항명과 규정대상

여기서는 URBPO의 법적 성격과 총 16조의 조항명과 규정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³⁶⁾

〈표 1〉 URBPO의 주요 규정내용

제1조(범위) : BPO에 대한 지위, 성격과 당사자 거래에의 BPO의 참여 방법 등
제2조(적용) : BPO에 대한 적용요령, 적용되는 URBPO의 최신의 버전, 요구하는 메시지 형태
제3조(일반적 정의) : BPO와 TSU/BPO거래에서 이용되는 일반용어의 정의
제4조(메시지 정의) : TSU/BPO 거래에서 이용되는 각종의 데이터메시지의 정의
제5조(해석) : 단수형, 복수형의 어구의 운용면, 다른 국가에 있는 관계은행지점의 법인격의 파악법
제6조(은행지급보증 대 계약) : BPO, 수령인의 은행 각각에 대한 거래상의 계약과의 관계
제7조(데이터 대 서류, 상품, 서비스 또는 이행관계은행이 취급하는 대상과 그 범위)
제8조(BPO의 유효기일) : 데이터셋의 확정완료베이스라인과의 관계, 데이터비교와 결과송부시기
제9조(관계은행의 역할) : 무역서비스관리메시지, 거래조합애플리케이션, BPO 첨부 베이스라인, 각각의 관계
제10조(채무은행의 확약) : BPO에 의한 영향, 데이터일치·불일치별의 지급확약, 사안별 지급금액 등
제11조(조건변경) : 각 관계은행, BPO 첨부 확정완료 베이스라인과의 관계, 조건변경거절의 경우
제12조(데이터의 효력에 대한 면책) : 관계은행이 어떤 의무나 책임도 가지지 않는 구체적 항목
제13조(불가항력) : 불가항력의 사건에 대한 관계은행, 채무은행의 의무와 책임
제14조(거래조합애플리케이션의 무효) : 무효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관계은행의 의무와 책임의 유무
제15조(적용법령) : BPO의 준거법의 결정, URBPO에 의한 준거법의 보완범위, 채무은행과의 관계
제16조(무역결제대금의 양도) : 수취인 은행의 양도의 권리와 양도의 채무은행과의 관계

자료 : URBPO의 규정집을 참조로 작성.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3b, p. 295.

36) ICC Publication No.750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Version 1.0", 2013 참조.

URBPO의 서문과 제3조에서 BPO의 정의로서 은행지급보증 또는 URBPO가 의미하는 것은 채무은행(매수인 측 은행으로서 BPO 발행은행)에 지급하거나 나중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수취은행(매도인 측 은행으로 지급보증의 수익자)에 대해 특정한 금액을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취소불능한 상태에서 또한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에 URBPO에 대해서도 제1조(범위)-제2조(적용)에서 설명되어 있다.

다음으로 URBPO에서는 제3조의 용어의 정의 이외에 제4조에 메시지의 정의로서 URBPO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메시지)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제5조(해석), 제6조(은행지급보증 대 계약), 제7조(데이터 대 서류·상품·서비스 또는 이행), 제11조(수정), 제12조(데이터의 유효기한의 책임한도), 제13조(불가항력), 제14조(거래조합애플리케이션의 무효), 제16조(대금의 양도) 등 UCP 600에도 규정되어 있는 유사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제15조(준거법)에 대해서는 UCP 600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URBPO에서는 채택되고 있다(채무은행의 본지점 소재지).

제6조와 제7조는 UCP 600에서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서류독립의 원칙과 동일하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서류 대신에 데이터만의 취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데이터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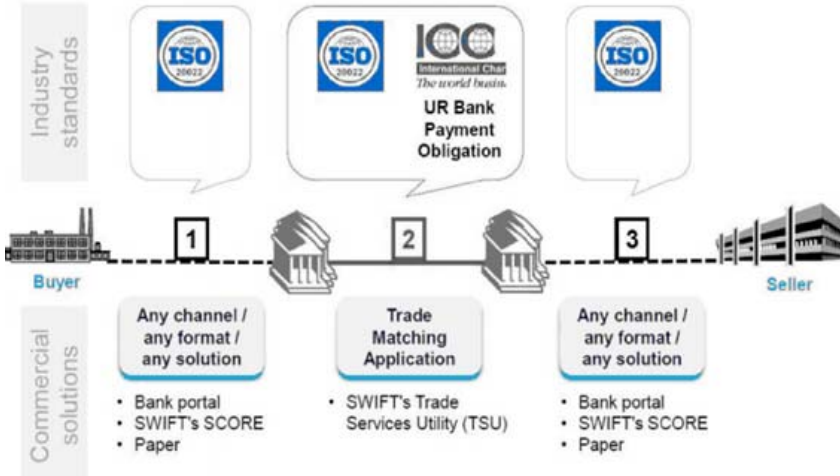
또한 URBPO의 특징인 당사자의 역할로서는 제9조에 당사자 은행, 제10조에 채무은행의 역할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제9조의 당사자 은행의 역할로서는 ISO 20022에 의한 무역서비스관리(Trade Services Management : TSMT) 메시지를 거래조합애플리케이션(Transaction Matching Application : TMA)에서 조합(베이스라인의 확립)하는 것³⁷⁾을, 제10조의 채무은행의 역할로서는 채무은행이 지급의 약속을 하고 그것이 취소불능이며 그 지급약속은 하나의 베이스라인의 확립에 대한 것이며 만기일에 특정 금액의 지급을 실행할 것 등을 명기하고 있다(〈그림 3〉 참조).³⁸⁾

37) SWIFT, *op. cit.*, pp. 10~11.

38) Lee Consultants Ltd., *op. cit.*, p. 12.

〈그림 3〉 TSU/BPO에 대한 산업표준



자료 : Lee Consultants Ltd., *op. cit.*, p. 10.

2) SWIFT 규정집과의 비교

SWIFT 규정집과 비교하여 주로 아래의 내용이 추가·변경되고 있다.

① SWIFT 규정집은 TSU의 기능의 BPO를 사용하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규칙’으로서 열거하였지만, URBPO에서는 BPO의 골격을 ‘약정’으로서 규정하고 더욱이 그것은 BPO 발행은행이 수취은행에 제공하는 은행지급확약에 적용되며 관계은행을 구속하는 것을 명기하였다. ② 일반(관계)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SWIFT 규정집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³⁹⁾ URBPO에서는 제3장에 일반의 정의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③ SWIFT 규정집에서는 명기되지 않았던 Baseline Match Report⁴⁰⁾을 비롯한 10종류의 메시지용어의 정의를 명기하였다. ④ SWIFT 규정집에서 BPO는 관계상거래와 독립된 것이라고

39) SWIFT 규정집에서는 제7장 제7항에 BPO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용어의 정의는 제1장 제5항 제5호에서 TSU 정의로서 규정하고 있다.

40) 이 용어는 확정완료 베이스라인의 성공한 산물 또는 두 가지의 베이스라인 간에 발견된 내용상의 불일치 중 어느 쪽인가 일방을 관계은행에 통지하면서 거래조합에플리케이션에 의해 거기에 보내어지는 무역서비스관리의 메시지라고 정의되어 있다.

규정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URBPO에서는 관계은행이 확정완료 베이스라인에 포함되어 있지만, 계약에 무관계로 구속되지 않으며 BPO 발행은행(즉, 채무은행)의 지급확약은 수입자에 의한 클레임 등에 종속되지 않으며 BPO의 수취은행은 어떤 경우라도 BPO 발행은행과 수입자 간에 체결된 계약관계를 이용할 수 없는 것 등을 명기하였다.⁴¹⁾ ⑤ 관계은행⁴²⁾은 데이터를 취급하고 그것이 관계하는 상품·서비스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거래조합결과의 데이터를 수령한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확약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 취급하는 메시지데이터에 기초한 관계은행자신의 역할을 명기하였다. ⑥ TSU/BPO 발행은행(채무자 은행)의 확약행위(지급)와 관련하여, 첫째, 확정완료 베이스라인과 수출정보 데이터가 일치된 경우의 대응요령에 대해 수취은행에의 유효기한일의 지급에 추가하여 후일지급의 확약을 하고 그 기한일에 지급을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TSU/BPO 발행은행이 거래조합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의 TSU/BPO 조건에 기초한 채무의 계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⑦ 관계은행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 기타 상품과 서비스의 이행, 거래에 관여한 어떤 대상자의 행위와 능력 등에 대해 그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기하였다. ⑧ 불가항력에 관한 TSU/BPO 발행은행과 관계은행의 의무·책임을 명기하고 있는데, 즉 천재지변, 전쟁을 비롯한 거래이행의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 각각의 은행은 의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하였다. ⑨ 준거법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TSU/BPO의 규제사항과 준거법에 대해서는 확정완료 베이스라인에 제시되지 않으면 TSU/BPO 발행은행의 장소의 그것에 따른다는 것과 URBPO는 그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범위까지 준거법을 보완한다는 것을 명기하였다. ⑩ TSU/BPO의 수취은행은 준거법에 따라 TSU/BPO에 기초하여 권한이 부여된 주체에 무역결제대금을 양도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기하였다.

41) R. Marchal, "The Trade Services Utility: latest developments", *DCInsight*, Vol.16, No.1, 2010, p. 22.

42) 관계은행이란 확정완료 베이스라인에 관련되는 수입자의 거래은행, 수취은행(통상 수출자의 거래은행), TSU/BPO 발행은행(채무은행)과 데이터제출은행을 의미한다.

Ⅲ. TSU/BPO의 이용상의 장단점과 이용 현황

1. TSU/BPO의 이용상의 장단점

무역거래시장에서 실제로 TSU/BPO가 선호될지 여부를 예상하기 위해 신용장, 송금결제라는 종래의 결제제도와 관계당사자(수출자, 수입자, 거래은행)별로 이용상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표 2〉 참조), 또한 위험경감효과의 측면에서도 설명한다.

1) 거래당사자별의 장단점

(1) 수입자

① 장점

(a) 결제조기화에 따른 매입금관리의 부담경감

은행에서의 선적서류점검과 송부·수령과정이 데이터전송·데이터조합화에 따라 대금지급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에 매입금관리가 쉽게 된다.⁴³⁾ 실례로서 일본과 홍콩·중국에서의 수입거래에서 지금까지 평균 2주간 정도를 소요하였지만 화물의 도착과 거의 같은 최단 3일, 최대라도 5일 이내에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⁴⁴⁾

(b) 신속한 거래의 실현

신용장의 발행에 비교하여 시간이 적게 소요되므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계속거래처라면 필요한 때에 그다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조달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실례로서 일본의 수입소매업에서 상품의 판매 정도를 보면서(중국에 있는 재고에서의) 선적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그 만큼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⁴⁵⁾

43) 강신원, “무신용장 방식 무역서류의 교환의 은행 간 전자화 구현: SWIFTNet TSU (Trade Service Utility) 서비스”, 제50회 한국무역상무학회 산학협동 동계 세미나 발표 논문집, 2013, p. 148. ; 채진익, 전개논문, 2013b, p. 293.

44) 黒田裕, “貿易決済電子化時代の幕開け—TSU Payment Serviceの活用について—”, 金融情報システム, No.312, 2012, p. 75.

(c) 수출기업에 대한 유리한 거래협상

신용장거래와 비교하여 결제시기가 조기화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격·납기 등의 면에서 수출자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d) 무역업무전문인재의 감축

신용장에 관한 지식이 불필요하며 취급하는 선적서류의 종류가 감소할뿐만 아니라 하자 등의 대응도 필요 없게 되므로 무역거래의 전문지식보유자의 인재를 줄일 수 있다.

② 단점

(a)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TSU/BPO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b) 상대측이 1회의 거래처, 또는 거래이력이 적은 곳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용이 어렵다. (c) 수출자의 이용동의의 취득에 시간이 소요된다. 전통적 결제수단인 신용장과 비교하여 새로운 제도이므로 수출자의 부담이 크며 채택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TSU/BPO 채택완료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자에의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과 수입자로부터의 강한 신청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수출자

① 장점

(a) 신속한 무역대금의 회수

신용장거래와 비교하여 선적에서 무역대금결제까지의 기간이 대폭으로 단축되어 수출대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다.⁴⁵⁾ 실례로서 10일 간 정도나 수입측에서의 대금지급이 단축되거나 브라질에서 중국으로의 수출거래에서 대금수령까지의 기간이 1/3 정도가 되어 수출자는 거액의 운전자금이 절약되었다는 보고가 있다.⁴⁷⁾ 이것은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출(선적)서류가 수출자의 거래은행

45) 小林二三夫, 전계논문, p. 180.

46) 강신원, 전계논문, p. 149.

47) SWIFT, "Supply Chain on SWIFT" issue 7 Q1, 2012에서의 Vale International S.A. (브라질국적기업) 참조. ; Institute of Financial Services, *Trade & Forfaiting Review, News 11*, June 11, 2012. ; MUFG, "Trade Service Utility(TSU) Bank Payment

에서 신용장발행은행에 송부되어 도착한 단계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만,⁴⁸⁾ TSU/BPO에서는 수출자가 거래은행에 제출한 수출(선적)서류의 사본에
기초하여 이 은행이 수출정보를 TSU 시스템에 입력하고 확정완료 베이스라인
과 조합하여 문제가 없는 단계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지급확약
의 이행).⁴⁹⁾

(b) 선적서류작성부담의 경감

신용장거래에서는 통상 대개의 종류의 선적서류가 요구되지만, TSU/BPO
에서는 수출자 거래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선하증권과 송장 정도(모두 사본)로
충분하므로 서류의 작성부담이 경감되며 그것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된다. 은행제출의 선적서류작성이 대폭으로 감축되므로 전문성이
높은 서류작성인재의 육성부담이 경감된다.

(c) 선적서류상의 하자에 대응하는 부담의 면제

신용장거래에서는 거래은행에서 하자내용(discrepancy)이 지적된 경우 수출
자는 상응한 지식·대응부담을 필요로 하지만,⁵⁰⁾ TSU/BPO에서는 구매발주서
대로 선적하는 한에서 BPO의 발행은행에서 지체 없이 지급이 이루어진다.⁵¹⁾

(d) 수입자의 취소·내용변경이 감소

신용장거래와 달리 TSU/BPO에서는 확정완료 베이스라인이 완성되기까지
수출자·수입자 상호간에 몇 번이나 재고하게 되므로 수입자로부터의 거래 취
소와 내용변경 의뢰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② 단점

(a) 거래은행이 TSU/BPO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추가하여, (b) 선적서류의 직송에 있어 시간이 소요된다. 신용장거래

Obligation(BPO) Case Study—First Forfaiting on TSU/BPO in the World”. 2013, p. 2.

48) 강원진, 전계서, pp. 337~338.

49) SWIFT, BPO press coverage, *op. cit.*, p. 1.

50) 강원진, 전계서, p. 337.

51) D. J. Hennah, *op. cit.*, p. 30.

에서는 거래 은행에 제출 후 이 은행에서 상대 은행에 송부되지만 TSU/BPO에서는 수출자 자신이 수입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3) 거래은행

① 장점

(a) 무역거래의 중심이 되는 관계의 강화

무역거래의 거래처에의 관여정도가 송금결제와 비교해 보다 높으며 중심이 되는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⁵²⁾ 또한 송금결제보다는 많은 수수료의 수입을 획득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b) 자본의 현명한 이용

Basel III⁵³⁾ 중의 자기자본비율(equity capital ratio)항목의 하나로서 타인자본(leverage)의 확대억제를 위한 타인자본비율도입이 결정되어 있다.⁵⁴⁾ 이 비율산출상의 위험노출정도(exposure)를 구성하는 부외(난외)거래항목(Off-balance item)의 위험자산(risk asset)으로서 무역신용장이 포함되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용장에서 TSU/BPO로의 대체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으로서 위험 자산과 신용 비용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⁵⁵⁾

(c) 운영비용의 저감

TSU 시스템에의 선적정보입력 후, 결제완료 베이스라인과 데이터자동조합이 이루어지므로 신용장과 선적서류를 수작업으로 심사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즉, 자동화 처리를 위한 사무비용을 보다 인하할 수 있다.

52) SWIFT, BPO press coverage, *op. cit.*, p. 3.

53) 주요국의 금융감독당국에서 구성하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 9월에 공표한 국제적으로 업무를 전개하고 있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공표문서의 표제는 보다 강인한 은행과 시스템을 위한 세계적인 규제 범위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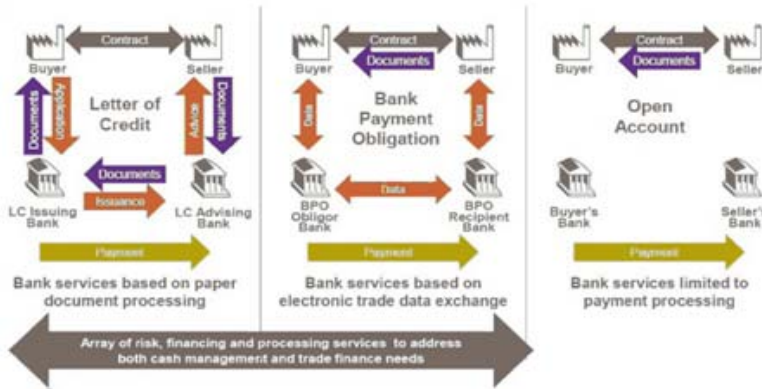
54) ICC Banking Commission, *op. cit.*, pp. 13~14.

55) SWIFT, BPO press coverage, *op. cit.*, p. 5.

② 단점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는 베이스라인과 수출정보입력 후 데이터 조합을 위해 SWIFT 설정의 TSU 시스템 접속을 위한 개발비용이 소요된다.

〈그림 4〉 신용장결제, BPO 결제와 송금결제의 비교



자료 : ICC Banking Commission, “The Bank Payment Obligation: Capital & Accounting Treatment,” *op. cit.*, p. 5 ; D. J. Hennah, *op. cit.*, p. 28.

〈표 2〉 무역결제시스템별의 장단점 비교

	신용장	TSU/BPO	송금기준(O/A)
1. 관계당사자의 영향			
1) 수입자 (1) 장점	① 신용장발행은행에 환취결제약이 있으면 어느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음 ②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같이 국가에 따라 신용장거래의 비중이 높은 곳이 있음	① 결제조기화에 따른 매입금관리의 부담경감 ② 무역업무전문인재의 감축이 가능 ③ 신속한 거래의 실현 ④ 수출기업에 대한 유리한 거래협상 ⑤ 신용장거래에 보이는 서류상의 하자에 대한 대응수수료가 필요 없게 됨	① 결제비용인 송금수수료는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하여 가장 저렴함 ② 결제의 절차가 가장 간단함

	신용장	TSU/BPO	송금기준(O/A)
(2) 단점	<p>① 신용장발행 수수료는 다른 결제수단에 비교해 비싼 편임</p> <p>② 종이 선적서류가 수출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국제특송업체 등으로 부터 보내져오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됨</p>	<p>①상대은행의 BPO 미 채택의 경우에는 이용불가능</p> <p>② 상대 측과 거래이력이 적은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움</p> <p>③ 수출자의 이용을 결정하기 위해 BPO의 채택은행으로부터의 이용계몽활동 등이 필요함</p>	<p>① 수출자의 신용력은 수입자 측의 노력으로 판단하게 됨</p> <p>② 결제에 대해서는 모두 자기관리 하에서 실행할 필요가 있음</p> <p>③ 수출자의 거래에 매입채권의 범위가 존재함</p>
2) 수출자 (1) 장점	<p>① · 신용장조건대로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P/O에 완전일치의 상품 출하가 아니더라도 신용장발행은행에서 지급됨</p> <p>② 선적서류에 하자내용이 있더라도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하려고 하면 통상은 문제가 되지 않음</p>	<p>① 무역대금회수의 조기화</p> <p>② 선적서류상의 하자내용에 대응하는 부담의 면제</p> <p>③ 선적서류작성부담의 경감</p> <p>④ 수입자의 취소·내용변경이 감소</p>	<p>①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p> <p>② 상대방이 지급확실한 수입자이라면 지체없이 대금을 수령할 수 있음</p>
(2) 단점	<p>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많은 선적서류의 작성부담·작성아웃소싱의 비용이 발생함</p> <p>② 은행에 제출한 선적서류에 하내용이 있는 경우 대응부담과 비용이 발생함</p>	<p>① 자기의 거래은행이 BPO 미채택인 경우는 이용불가능</p> <p>② 선적서류의 직송할 필요가 있음</p>	수출대금의 지급보증 없이도 수입자에게 위임되어 있음
3)거래은행 (1) 장점	가장 수수료 수입이 크며 해당 무역거래에 추가하여 주변 거래정보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p>① 무역거래의 중심이 되는 관계의 강화</p> <p>② 사무비용의 인하와 수수료 수입의 획득</p>	거래에 고객 측의 신용위험이 개입되지 않음
(2) 단점	각종 선적서류의 점검과 선적서류의 하자의 처리를 비롯한 무역실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인재 또는 아웃소스가 필요함	시스템개발비용의 소요	송금거래는 수익폭이 적으며 고객의 상류 등의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움

	신용장	TSU/BPO	송금기준(O/A)
2. 준거규정	UCP 600	URBPO	취급은행이 규정한 외국송금거래규정
3. 법적 효과	신용장의 금액과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 대해 보증과 유사한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발행의뢰인에 대해 지급채무의 구상채권을 가짐	BPO는 단일의 무역거래의 확정된 조건에 따라 명기된 금액을 BPO 발행은행(채무자은행)이 수취인의 은행에 취소 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함	도착은행은 송금인의 의뢰에 기초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위임된 사무를 환취결제약에 따라 수취은행에 위탁함

자료 : ICC Brochure, SWIFT의 간행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2. 위험경감효과

ICC에서는 TSU/BPO의 위험경감효과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⁵⁶⁾

첫째, TSU/BPO는 낮은 신용등급의 수입자와 거래은행 각각의 재정위험 등을 경감하고 수출자의 일시적인 운전자금의 요구를 충족한다. 예컨대 신용장과는 달리 수입자가 최초의 거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 은행에 BPO의 발행(지급확약)을 의뢰함에 따라 복수 은행에 그 위험을 확산할 수 있다.⁵⁷⁾

둘째, TSU/BPO는 선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수출자는 조기의 대금수령을 위해서는 베이스라인 확정 후 조기에 선적을 실시한 후 선적정보를 거래은행에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환시세, 인플레이션률과 금리의 변동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지급확약 은행에서 자국통화의 이용 또는 통화헷지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⁵⁸⁾

56) ICC Banking Commiss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Corporates," Discussion Paper 470/1221, 2013, pp. 1~8.

57) SWIFT, BPO press coverage, *op. cit.*, p. 2.

58) ICC Banking Commission, *op. cit.*, p. 7.

2. TSU/BPO 제도의 이용 현황

2012년 10월 현재 TSU/BPO는 세계에서 45의 은행그룹(유럽·중동·아프리카: 22개, 아시아 태평양: 16개, 미주지역: 7개)이 채택하고 있다(〈표 3〉 참조). 현재 각 은행 모두 추진의 대상처는 업계의 거대거래처가 중심이지만 대개의 기업의 이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도이므로 중소기업에의 이용의 확대를 기대하고자 한다.

〈표 3〉 TSU/BPO 제도의 채택은행의 현황

남북아메리카(7)	유럽·중동·아프리카(22)	아시아 태평양(16)
Banco do Brazil Banco Itau BBA Bank of America BMO Capital Markets BNY Melion Citi JP Morgan	Barclays BNP Paribas Byblos Bank Commercial Bank of Dubai Commerzbank Deutsche Bank FIM Bank First National Bank of S.Africa HSBC ING National Bank of Greece Qatar National Bank Standard Bank of S.Africa SEB The Royal Bank of Scotland UBS Unicredit Bank al Etihad Societe Generale La Caixa Rabo Bank al Khaliji	ANZ Bangkok Bank Bank of China Bank of Communications BTMU China Citic Bank China Minsheng Bank Hua Nan Bank Kasicom Bank Korea Exchange Bank Siam Commercial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SMBC Afe Asia Bank MayBank NLB

주 : TSU 만의 등록은행 수는 102개(The Royal Bank of Scotland, “SWIFT trade initiative cuts through complexity and increases security,” 2011).

자료 : SWIFT, “Market adoption of BPO”, Oct. 24, 2012.

〈표 3〉와 같이 세계의 45개 은행그룹이 BPO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을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의 은행그룹의 채택이 많은 것이 특징이지만 이것은 중국을 비롯해 과거부터 상관습으로서 신용장거래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인해⁵⁹⁾ 그 대체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⁶⁰⁾

한편 거래의 안전 면에서 보면 TSU/BPO는 원래 수출자가 구매발주서 대로의 선적을 지체 없이 행하고 수입자도 거래은행이 지급확약을 이행 후에 지체 없이 결제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중소기업에서도 상대방과 항상적, 또한 양호한 거래관계에서 재무상황에 문제가 없는 거래처라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⁶¹⁾ ICC 은행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의 이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⁶²⁾ BPO의 발행은행은 BPO의 외측에서 취급되는 운송서류 또는 관계화물을 BPO에서 담보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입자와의 상호의 동의서 중에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선택해도 된다. BPO의 수취은행으로서의 수출자와의 동의서에서 BPO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신용장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유사하다.

Standard Chartered Bank의 담당자(Achutosh Kumor)의 의견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⁶³⁾

“지금까지 TSU/BPO의 관심은 대기업 측에서 있었지만 공급체인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도 또한 유익한 메커니즘이다. 중소기업은 기술력에는 뛰어나 있지만 그들의 공급체인을 보면서 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을 보좌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TSU/BPO는 그 때에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예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59) 지역별의 결제방법에 따르면 송금기준 대 신용장기준의 비율은 세계전체로 70% 대 30%, 유럽에서 80% 대 20%에 비해, 중국에서는 45% 대 55%, 일본에서는 70% 대 30%로 되고 있다(佐藤武男, “クロスボーダー決済におけるTSUの意義と動向”, 經理情報, 第1158号, 2007, p. 1.).

60) P. Johnson, *op. cit.*, p. 23.

61) 채진익,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제50회 한국무역상무학회 산학협동 통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3c, pp. 130~131.

62) ICC Banking Commission, *op. cit.*, pp. 11~12.

63) SWIFT, “Trade & Supply Chain, issue 7 Q4,” 2012.

실제로 일방이 예컨대 거대수입기업이더라도 공급체인의 상대방이 중소의 수출기업인 경우도 자주 있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는 이 새로운 무역결제구조의 추진에서 각 TSU/BPO의 채택은행 자신의 판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SWIFT, 기타의 자료에서 최근의 TSU/BPO 제도의 도입 검토기업으로서, British Petroleum Chemical(영국), Vale International S.A.(브라질), 현대자동차 3개사의 경우에 이용의 구체적 장점·이용법의 설명에서 기업은 TSU/BPO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⁶⁴⁾ 첫째, 선적서류의 교환이 전자거래화된 것에서 처리속도가 향상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취급하는 선적서류의 대폭적인 절감에 의해 관여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수출자와 수입자가 원거리의 경우는 10일간 정도로 수입 측에서의 대금지급이 단축된다. 넷째, 수출기업은 거래상황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⁶⁵⁾ 다섯째, 결제위험이 있는 해외판매점은 신용장과 함께 이용의 적절한 후보자로 보고 있다.

즉, TSU/BPO 거래의 이용 장점으로 위의 주요한 내용은 거의 검토 중의 기업에 있어 실제로 장점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제도로서 무역업자에게 선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IV.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

1. 거래의 안전성의 문제점

1) 사기

무역거래와 관련된 사기로서는 수출자가 매매계약대로의 서류를 작성해 두어 실제로는 계약과 다른 물건을 수출하고 대금은 선지급 등으로 사취하는 경우가 주요한 것이다. ICC에서 UCP 600의 기안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64) SWIFT, issue 7 Q1, *op. cit.* ; Institute of Financial Services, *op. cit.*

65) British Petroleum Chemical은 이점에 대해 현재 총 거래가격의 0.8%까지의 비용을 소요하고 있는 거래상황 확인에 관한 비용을 절감(절약효과의 견적합계액은 연간 200만 달러)할 수 있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

Gary Collyer는 다음과 같이 TSU/BPO의 사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⁶⁶⁾

“어떻게 BPO는 사기의 선적을 방지하는 것일까. TSU/BPO는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사기의 선적을 방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은행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처에 대해 그들의 표준의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정보 확인)를 실행하여 상응한 주의에 기초한 점검을 요구받을 것이다.⁶⁷⁾ 그러나 은행제출의 데이터는 그들이 거래조합애플리케이션에 제출하는 데이터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거래처에서 수령한 데이터가 그들의 제출하는 데이터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기대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TSU/BPO에서도 수출자의 선적사기는 신용장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제도로서는 방지할 수 없는 것이다.

사기에 대한 신용장거래의 실례로서 ① 신용장자체의 위조, ② 수출환의 매입대금을 사취하는 목적의 선적서류위조, ③ 수입자가 화물을 사취하는 목적의 사기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⁶⁸⁾

여기서 TSU/BPO에서 ②와 ③을 고찰하기로 한다. TSU/BPO에서는 구체적으로 ②는 수출자가 가치가 없는 물건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는 구매발주서와 같은 것을 구비하거나 또는 실제의 선적을 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 후에 선하증권, 송장 등의 사본을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제출한다. 그리고 확정완료 베이스라인과 내용을 일치시켜 BPO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실행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③은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수령하고 화물이 도착함과 동시에 그것을 인수한 후 거래은행에 무역대금의 지급을 하기까지 행방을 감추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TSU/BPO가 원래 그러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는 방지할 수 없다. 이것은 ②에 대해 TSU/BPO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데이터의 진정성의 입증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③에 대해서도 BPO로부터 발생하는 유일한 의무는 BPO 지급은행(수입자의 거래은

66) G. Collyer, “The Bank Payment Obligation—now a reality(Part 2)”, *International Trade Newsletter*, No.46, 2012. ; ICC, URBPO Online Training. (www.coastlinesolution.com)

67) 채진익, 전계논문, 2013b, p. 294. ; Lee Consultants Ltd., *op. cit.*, p. 3.

68) 八尾晁·外, 전계서, p. 120.

행)이 BPO 수취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지급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행 후에 수입자가 BPO 지급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대처는 TSU/BPO를 개시할 때에 은행과 수입자가 교환한 거래약정서의 규정에 기초한 것이 된다. 물론 은행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수출자·수입자 각각에 표준적인 고객확인을 실행하고 재무상황 그 밖에 대해 상응한 주의에 기초한 점검을 요구받는다.

2) 은행의 채권보전

신용장거래에서는 은행이 수출화환어음을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후의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통상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첫째, 거래 개시 전에 화환어음 매입 후에 수입자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수출자가 해당 어음의 환매에 따른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거래약정서를 수출자로부터 제시하도록 한다. 둘째, 신용장에서 화물을 화제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은행제출서류로서 전통 요구하고 만일의 경우에 그것으로 화물을 입수한 후 처분하여 대가를 획득한다.⁶⁹⁾

TSU/BPO에서는 당연히 베이스라인의 확정 후,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거래은행 측에서 채권보전은 할 수 없다. 따라서 TSU/BPO의 거래를 개시할 때에 은행과 수입자가 교환한 거래약정서에서 은행의 채권보전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는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은행으로서도 TSU/BPO는 거래관계가 양호하고 대금결제에 문제가 없는 수출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할 것이다.

TSU/BPO에서 수출자의 거래은행, 수출자의 채권보전 면을 신용장거래와 비교해 보면, 우선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의 채권보전과 관련하여 선하증권은 화물을 화제한 유가증권이므로 원래 신용장거래에서는 필요서류로서 수출자에게 선하증권 전통의 은행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물적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수입자가 조기에 화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출자와 수입자의 매매계약단계에서 선하증권 1통을 수입자 측에 직송하는 조건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물적 담보권은 없게 되며

69) 강원진, 전게서, pp. 323~324.

은행으로서는 수출서류의 하나인 환어음의 환매청구권과 수출자의 신용력을 비롯하는 거래자체의 건전성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편 TSU/BPO의 거래에서는 기업 간의 화물과 서류의 교환에 은행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며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자·수입자 쌍방의 거래은행으로부터 TSU 시스템에 입력한 구매발주서의 정보가 일치한 단계에서 수출자가 직접, 수입자에게 선하증권을 비롯한 수출서류를 송부한다. 이로 인해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이것을 수입자가 인수할 위험은 있다.

그런데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1통의 선하증권을 직송하는 취급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으며 Surrender B/L 등도 이용되고 있는 현재에는 이 제도에 대해 SWIFT에서는 TSU/BPO 보급의 걸림돌이 된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근거리의 무역거래에서는 컨테이너와 고속선에의 수송에 따라 은행영유로 수출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화물이 도착하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수출자도 수입자가 화물을 먼저 인수하더라도 서류상의 결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보해 두고자 하는 것이 대개의 실정이라 볼 수 있다.⁷⁰⁾ 다음으로 수입자의 결제에 선행하여 먼저 수출서류를 송부하는 수출자의 채권보전 면인데 이것은 원래 TSU/BPO 거래자체가 결제에 관해서는 신용 면에서 문제가 없는 수입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한 후에 결제의 조기화를 도모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이 있는 제도이므로 신용장거래에서의 1통의 선하증권의 직송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고찰의 대상 밖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3) 은행의 파산·지급지연

여기서 말하는 은행이란 BPO 지급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을 말한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발행은행이 파산한 경우에 그것이 선적 후에 더욱이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매입실행 후의 경우는 그 신용장이 확인신용장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가 은행의 환매청구에 기초하여 매입대금을 반환하고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조급하게 대금회수를 하게 된다.⁷¹⁾ 한편 TSU/BPO에서는 수출자의 매입은행은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입자 거래은행과

70) 黒田裕, 전계논문, p. 78.

71) 강원진, 전계서, pp. 77~78.

수출자 거래은행 간에 베이스라인이 문제없이 확정되어 지급이 실행되어야 하는 때에 수입자 거래은행이 파산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은행은 수입자 거래은행의 위험을 승인한 때에 URBPO의 외측에서 지급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출자 거래은행에게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우는 후자가 전자에게 페널티의 금리를 청구하게 된다. 한편 TSU/BPO에서는 수입자거래은행이 적절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 URBPO상 수출자 거래은행에 지급을 하는 것은 BPO 발행은행뿐이라고 보고 있지만, 수출자 거래은행과 수출자 간의 거래약정서에 기초하여 URBPO의 규정을 초월한 대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⁷²⁾

2. 해상운송서류의 문제점

1) 무담보신용장과 채권관리 위험

화환신용장은 물건대금의 결제수단으로서 발행되므로 신용장관계자에 있어 물건이 운송을 위해 운송업자에게 인도되어 운송계약이 성립한 것을 증명하는 운송서류가 중요하며 또한 신용장발행은행과 지정은행은 그 물건을 신용장발행을 위한 담보, 또한 인수·매입을 위한 담보로서 보고 있으므로 운송서류는 담보권 대상의 보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로 인해 UCP 600에서는 제19~27조에 운송서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⁷³⁾

한편 무담보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에 운송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서류가 담보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Surrender B/L, 1통의 선하증권의 직송, BPO 등도 그것에 해당하며 그 특징으로서는 UCP 600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채권관리위험이 항상 따라다니는 점이다.

이들 중에서 Surrender B/L과 1통의 선하증권의 직송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환신용장제도에 기초한 것이며 신용장발행은행이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보증금을 취하는 등 별도의 담보 제공에 따라 은행으로서의 위험은 회피할 수 있지만 직송의 결과로서 선하증권의 도난·분실의 경우에 처리면의 법적 문제

72) ICC Banking Commission, "Frequency Asked Questions-Corporates." *op. cit.*, p. 4.

73) 강원진, 전게서, pp. 233~249.

등이 남는다.⁷⁴⁾

2) TSU/BPO에 의한 해상운송서류의 영향

TSU/BPO의 경우 URBPO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증권, 증명서류 등의 데이터셋은 그 제7조에서 BPO의 취급 대상 밖으로 되어(매수인에게의 직송), UCP에 규정한 운송서류에 관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의 BPO의 운영 상 운송서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래의 화환신용장제도 하에서와 같이 UCP 600의 규정을 원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채권관리면의 위험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선하증권의 직송의 결과 발생 되는 선하증권에 담보기능이 없게 되는 것에 따른 위험이다. 화환신용장제도에서는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이 은행경유로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때문에 신용장 발행은행에는 선하증권에 담보가치가 있었지만, URBPO에서는 선하증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송되기 때문에 채권자인 매도인과 BPO의 발행자인 채무은행 또는 매입은행에 해당하는 수취은행에는 양도담보권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담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채무은행이 발행하는 BPO의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채무은행은 당연히 BPO의 발행의뢰인인 수입자에게 담보의 제출 및 보증료의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은행 측에서는 발행은행의 신용불안, Country Risk와 불일치에 관한 점검업무의 곤란함을 그 이유로써 그 위험을 매도인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URBPO상의 결제의 경우에는 불일치에 의한 점검업무의 곤란성은 해소되겠지만 선하증권 직송에 의한 여신위험이 매입은행 측에게도 남게 된다면 은행의 여신위험의 문제도 남게 된다.

74) 三倉八市, “サレンダー-B/L”, JCAジャーナル, 第57卷 第8号, 日本商事仲裁協会, 2008, p. 57.

V. 결 론

UCP가 그러한 바와 같이 ICC가 규정한 통일규칙은 원래 법률이 아니라(관습법의 측면은 있지만), 일종의 거래약관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실제의 거래상에서 거래당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속할지이다. UCP는 해당 거래의 신용장 중에 UCP의 준거문구가 삽입됨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그것에 구속되게 되지만, TSU/BPO의 경우는 신용장에 상당하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수입자와 수출자가 각각의 거래은행과 교환하는 거래약정서에 URBPO의 준거문구가 삽입되는 것으로 그것에 구속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신용장에 대체되는 무역결제제도로서 유효한 TSU/BPO 제도의 향후의 채택 확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TSU/BPO 제도를 채택하는 곳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45개 은행이라는 것은 아직 적다고 볼 수 있다. 일방의 무역당사자의 거래은행이 채택하고 있더라도 무역상대방의 거래은행이 채택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의 이용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 채택에 있어서는 은행 측에 시스템과 인프라의 완비가 요구되지만 향후 중소기업까지 도입의 시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더욱이 채택은행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기존의 신용장거래라는 긴 역사를 가진 수단이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결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때에 세계적인 대기업에 의한 도입실적의 홍보효과를 매우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업종의 기업에 도입실적이 확대되는 것이 더욱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금회수의 신속화와 서류작성부담의 대폭적인 감축 등 수입기업에 비교하여 수출기업 쪽이 보다 금전적으로 현저한 장점이 크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에의 도입도 전망한 경우에 수입기업에 더욱이 도입의 장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의 발행수수료와의 비교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는 이용수수료의 설정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금까지 SWIFT가 그 정기간행자료로서 TSU/BPO를 추진할 것을 권장해 왔다. 2013년 4월 URBPO가 출판된 후 ICC에서도 도입 기업으로부터 실무 면에 관한 실천적인 정보 수집을 한 후에 새롭게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을 위해 TSU/BPO에 의한 무역결제제도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실무에 따른 해

설서 등의 간행, SWIFT와 관계단체 등과 협찬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계몽활동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방향성과 ICC 통일규칙의 출판물에서 제도의 신뢰성에의 뒷받침이 이루어져 그 결과로서 위의 과제가 해결·추진됨에 따라 종래의 경제제도의 대체로서 TSU/BPO의 도입 기업이 점차로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TSU/BPO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항상적,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관계라면 신용장거래와 비교하여 대금결제시기의 조기화, 기동성의 우월성을 비롯한 이용 상의 이점이 많다. 더욱이 이 제도에 URBPO가 추가됨에 따라 이용에의 안심감이 확대되어 TSU/BPO의 채택은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CC 등에서도 TSU/BPO의 권장이 더욱더 추진되어 TSU/BPO 채택은행에서도 D/B에서 수신한 상품발주서의 자동처리 등의 시스템능력의 확대와 TSU/BPO의 담당인재의 확충 등 인프라 면을 확충하여 이용에 상응한 중소기업에의 도입이 추진되어 갈 것을 기대한다.

한편 해상운송서류의 변천은 대금결제방법과의 관련에 따른 것이 많지만 그 최근의 역사는 선하증권의 위기에 대한 회피책으로서의 것이다. 그 회피책에 완벽한 것이 없으므로 이번에 SWIFT와 ICC에 의한 은행지급보증통일규칙(URBPO)이 출현하여 실시되게 되었지만, 이 규칙의 문제점으로서 매수인에게 선하증권의 직송의 결과 이 규칙 내의 운송서류에 관한 규정의 결여의 문제와 당사자은행의 채권관리위험이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대금결제에 관한 규칙으로서는 URBPO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외로서 선하증권에 관한 분쟁은 UCP 600을 원용하는 등 규칙의 결정방법도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다면 BPO가 선하증권을 유가증권으로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오히려 해상화물운송장 쪽이 BPO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이란 UCP 600 제21조에 이 비유통성운송서류를 인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CMI 통일규칙도 적용되게 되어 불측의 분쟁에도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자, 수입자, 거래은행 등이 TSU/BPO 제도를 채택함에 있어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관계당사자도 TSU/BPO 제도를 채택하여 무역거래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신원, “무신용장 방식 무역서류의 교환의 은행 간 전자화 구현: SWIFTNet TSU(Trade Service Utility) 서비스”, 제50회 한국무역상무학회 산학협동 동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3.
- 강원진, 신용장론(제5판), 박영사, 2007.
- 김은주, “국제운송계약상 해상화물운송장과 전자선하증권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1권, 2011.
- 오원석, 무역계약과 결제, 삼영사, 2007.
- 이시환·김정희, 국제운송론(제2판), 대왕사, 2010.
- 임석민, 국제운송론(제3판), 삼영사, 2007.
- _____, 선하증권론(개정판), 두남, 2010.
- 채진익,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 도입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9권, 2011.
- _____,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제9권 제4호, 2013a.
- _____, “국제무역에서 BPO솔루션의 도입과 운용”, 2013년도 한국무역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3b.
- _____,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제50회 한국무역상무학회 산학협동 동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3c.
- 三倉八市, “サレンダーB/L”, JCAジャーナル, 第57卷 第8号, 日本商事仲裁協會, 2008.
- 小林二三夫, “小売業の国際調達と電子L/Cの方向性”, 日本貿易学会年報, 第46号, 2009.
- 新堀聡, 現代貿易売買—最新の理論と今後の展望, 同文館, 2001.
- 佐藤武男, “貿易の電子化で進む新しい貿易決濟”, 金融法務事情, 第1846号,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08.
- 中島真志, SWIFTのすべて, 東洋經濟新報社, 2009.
- _____, “Sibos 2012 大阪のポイント”, Sibos 2012發表論文集, 2012.
- 八尾晃, 国際取引と電子決濟, 東洋經濟情報出版, 1997.

- 八尾晃・外, 貿易と信用状—UCP600に基づく解説と実務, 中央経済社, 2010.
- 平野英則, “特殊な信用状の発行時における実務上の留意点(その3)”, 銀行法務, 第690号, 経済法令研究会, 2008.
- 合田浩之, “船荷証券の元地回収について”, 日本貿易学会年報, 第43号, 2006.
- _____, “記名式船荷証券・海上運送状の卓越—その意味するところについて—”, 国際商取引学会年報, 第9号, 2007.
- 黒田裕, “貿易決済電子化時代の幕開け—TSU Payment Serviceの活用について—”, 金融情報システム, No.312, 2012.
- 檜垣拓也, “L/Cに代わるTSU/BPOの動向, 有効性, 並びに推進課題の考察”, 国際商取引学会年報, 第15号, 2013.
- _____, “銀行支払確約付きTSUの仕組み・現状とSME利用への考察”, 国際金融, 第1249号, 2013.
- Casterman, A., Accelerating Global Trade Finance, SWIFT, 2012a.
- _____, “The BPO update”, *DCInsight, Vol.18, No.3*, 2012b.
- Collyer, G., “The Bank Payment Obligation—now a reality(Part 2)”, International Trade Newsletter, No.46, 2012.
- Hennah, D. J.,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ICC Publication No. 751, 2013.
- ICC Banking Commission, “The Bank Payment Obligation: Capital & Accounting Treatment,” Discussion Paper 470-1204-12, 2012.
- _____, “Frequently Asked Questions—Corporates,” Discussion Paper 470/1221, 2013.
- ICC,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Version 1.0*, ICC Publication No.750E, 2013.
- Institute of Financial Services, *Trade & Forfaiting Review, News 11*, June 11, 2012.
- Johnson, P., “The Bank Payment Obligation: 21st Century Trade Settlement”. TMI Special Report, 2013.
- Lee Consultants Ltd., “Introduction to and Comments on Bank Payment Obligation(BPO),” 2013.
- Marchal, R., “The Trade Services Utility: latest developments”, *DCInsight*,

Vol.16, No.1, 2010.

Meynell, D., "The BPO: a banker's perspective", *DCInsight, Vol.18, No.2*, 2012.

MUFG, "Trade Service Utility(TSU) Bank Payment Obligation(BPO) Case Study—First Forfaiting on TSU/BPO in the World", 2013.

SWIFT, "BPO press coverage," *gtnews*, 2012.

_____, "Market adoption of BPO," Oct. 24, 2012.

_____, "Supply Chain on SWIFT," issue 7 Q1, 2012.

_____, "Trade & Supply Chain," issue 7 Q4," 2012.

The Royal Bank of Scotland, "SWIFT trade initiative cuts through complexity and increases security,"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s by the Introduction of TSU/BPO System as a Instrument of Trade Settlement

Han, Nak Hyun

Kim, Young G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the implications by the introduction of TSU/BPO system as a instrument of trade settlement. Jointly with financial messaging provider SWIFT, the ICC Banking Commission has developed the URBPO to take into account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all relevant sectors. Once the goods have been shipped, the seller's bank uploads the shipping and logistics data to the TSU to be checked against the baseline.

URBPO is the first ever set of standards in supply chain finance that governs BPO transactions worldwide. BPO enables banks to reduce the risk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to the benefit of both buyers and sellers. A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given by an Obliger Bank to a Recipient Bank to pay a specified amount under the condition of a successful electronic matching of data or acceptance of mismatches.

The BPO should be viewed as an exercise in collabor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and their banks. Drawings upon global standards and incorporating the benefits offered by letters of credit, the new instrument has the potential to benefit all parties in a trade transaction—and bring trade settlement into the 21st century.

Key Words : SWIFT, TSU, BPO, URBPO, ICC Banking Commission